

의안번호	2125940
의 퇴 인	정경희의원
회 답 일	2023. 12. 19.
추 계 번호	23C50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제2항 신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제2항 신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현행 지원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
-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수,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참고로, 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2023년 예산 39억 4,000만원)을 통하여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총 25개소)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학습한국어, 진로한국어, 수준별 의사소통), 진로교육(진로 탐색·설계), 필수교육(안전, 건강, 유해환경), 선택교육(생활적응, 교과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집단상담 등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 또한 이주민 밀집지역(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1개 지방자치단체당 2억 3,900만원의 사업비 지원)

[표 1]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명	대상					
레인보우스쿨	이주배경청소년	1,832	1,748	804	1,131	1,584
비교문화체험학습	북한이탈청소년	97	96	21	119	124
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이주배경청소년	190	191	96	87	89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일반청소년	1,524	111	1,897	4,325	4,979
지원인력 양성	청소년지도사 등	—	—	—	442	4,200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윤경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윤경	02-6788-4742	yoonklee@assembly.go.kr